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36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김미애 · 강승규 · 김선교
김은혜 · 성일중 · 최수진
나경원 · 김 건 · 김민전
조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장기근속자 · 정년퇴직자 등의 자녀 · 친인척 등을 우선 · 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 ·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 · 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2”를 “제4조의2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 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1. 2. (생 략) <u><신 설></u>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장기근속자 · 정년퇴직자 등</u> <u>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u> <u>선 · 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u> <u>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u>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 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 인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u> <u>2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u><신 설></u>	제16조(벌칙) ① ----- ----- ----- <u>5년 이하의 징역 또</u> <u>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 ----- ---. ② <u>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u> <u>장기근속자 · 정년퇴직자 등의</u> <u>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 ·</u> <u>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u> <u>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u>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u> <u>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17조(과태료) ① <u>제4조의2</u> 를 위	제17조(과태료) ① <u>제4조의2제1호</u>

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 ④ (생략)	<u>또는 제2호</u>-----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